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및 그에 따른 지도·감독 가능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됨.

○ 검토 결과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2.3.)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전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체육회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상위법에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며,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항목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준 3억 9,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도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한 것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7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 의 자: 우경란·김지연·전승관

이성수·정선희 의원(5인)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체육지도자(이하“선수 등”이라 한다)”를 “장애인체육지도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

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장애인우수선수와 <u>체육지도자(이하“선수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u></p> <p>3. ~ 6. (생 략)</p> <p>③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장애인체육지도자</u>-----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①</u>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1. <u>인건비</u></p> <p>2. <u>사무관리비</u></p> <p>3. <u>임차료</u></p> <p>4. <u>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p> <p>② <u>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u></p>

제5조 · 제6조 (생략)

<신설>

제7조 · 제8조 (생략)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 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8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 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 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